

제267회 임시회
2008. 2. 1(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2. 1(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이영복 의원외 6인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8년 1월 14일

○ 회부일자 : 2008년 1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8.1.24)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산업경제위원회 이영복 의원)

가. 제안이유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에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충청북도의 경우 교류실적이 저조 할 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충청북도가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으로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인도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한 신뢰 구축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통일농업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북한의 주민과 공동으로 행하는 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인 사업으로 사업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북한에 진출한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 (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
 - (2) 기금의 조성은 도 및 시·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정함.
 - (3) 기금의 용도는 남북농업교류협력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금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내지 안 제16조).
 -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2) 위원은 남북농업교류협력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남북교류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충청북도의회 의원, 도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 (3) 위원회의 기능은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함.

(4)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정함.

-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정함(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전문위원 : 최영배)

-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해지고 각 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도의 경우 교류실적이 저조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다른 시·도의 경우 교류사업 범위가 문화·체육·학술·경제분야 등 다양한데 비해 이번 조례안이 농업교류 사업에만 한정하는 것과 기금설치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 및 기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 신중한 심의·검토가 요구되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통하여 민족의 상호 이해증진과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행하는 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인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서 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2조의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도의 책무) 도는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제5조(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가 정한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

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④ 도지사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농업교류협력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0조의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로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 팀장
3. 기금출납원 :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의 회계관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지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등)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

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3장 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

제11조(설치) ①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 농정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농업교류협력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3. 충청북도의회 의원
4. 도 관계공무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의 남북농업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농업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농업교류의 협력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실무추진단)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등) ①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②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전문개정 2005.5.31]

제16조(협력사업자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 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7.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8.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절차 및 청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31]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이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1998.12.31>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개정 1991.2.1, 1998.12.31, 2005.11.30>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 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 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8.12.31, 2001.10.31, 2005.11.30>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당국의 확인서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8.12.31>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절차 <개정 2005.11.30>)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8.12.31>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3.16>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7.1, 1999.12.31, 2005.4.27>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 17, 1998.2.28>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삭제 <2004.6.11>
 3.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및 관련 기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998.2.28>
- ③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1998.2.28, 2004.6.11>
- ④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8>
-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위원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개정 2004.6.11>